

2026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경기 북부(동두천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5월 0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내용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최대 27,300천원) 지원(VAT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공사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 2026년도 동두천시 사업예산 >

(단위 : 개소/천원)

시·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동두천시	1	27,300	13,650	13,650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경기북부(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은 지원 자제

○ 우선지원

-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 하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최근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폐수처리공법을 변경하여 수질개선에 기여도가 높게 예상되는 사업장
- 기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하는 경우, 개별업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은 예외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사용기간은 환경시설 특성상 내구성 및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통상적인 기간 “3년”으로 한다.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05. 06.(수) ~ 05. 13.(수)

○ 접수기간 : 2026. 05. 06.(수) ~ 05. 13.(수) 18:00 까지

※ 2026. 05. 13. (수) 18:00 우편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신청관련

- 지원 사업장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시설공사 업체이어야 함

※ 폐수처리시설 공사 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면허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접수방법 : 우편제출(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메일로도 제출必)

- 이 메 일 : kyu7536@gdtp.or.kr

※ 메일 제목 :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

- 제 출 처 : 우)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3-2호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담당자 (문의: 031-539-5117)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제출서류		양식
1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2	개선계획서	별지 제2호
3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기업 각 1부)	-
5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기업)	-
6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유효기간 확인必) ※ 신청 사업장, 시설공사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11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별지 제5호
1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별지 제6호
13	보조금 반납 약속서	별지 제7호
1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별지 제8호

○ 사업신청서 접수 방법

- 시설공사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예시) 1. 원본 1부 (3공 D링 바인더 5cm 파일)

2. 사본 1부 (정부화일)

※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파일철로 제출

※ 원본 서류 (PDF 파일), 공사비 산출 내역서 (엑셀 파일)는 이메일(kyu7536@gdtp.or.kr) 제출

원
본



사
본



4. 지원기업 선정

-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신청서 및 개선계획서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 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개선계획서 작성은 지원사업 목적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개선 계획 및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설계·시설비의 적정성과 개선 효과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의·평가되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공고 차수에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5.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하며,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 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시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일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배출사업장은 시설공사 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시설공사 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일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가동개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1회에 한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 도면, 예산 등)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지원사업 선정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 전·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측정예정으로 채수 일정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전 수질측정기록부가 없는 경우 기본항목 5가지에 대한 수질측정 후 측정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폐수배출항목에 색도가 신고되어있는 경우 색도 추가하여 제출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 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함

【별지 제1호 서식】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031-000-0000) (F A X : 031-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		주 생산품		
	평균매출액	' 25년 평균액		자산총액		
	종 별	신고필증에 명시된 종수		수혜사업장 환경담당자	성명 : 000 (연락처 :) (e-mail : 필수가입)	
사 업 내 역	배출시설명 (용량)	ex) 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신고필증상 배출시설코드 작성)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ex) 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1,000m³)	
	설치·개선 내용	설치·개선 부분과 필요성 서술				
	재 원 별 (VAT제외) 만단위 절사	총소요금액	금123,000,000원(금일억이천삼백만원)			
		지원신청액	금68,600,000원(금육천팔백육십만원)			
자체부담액		금54,400,000원(금오천사백사십만원)				
시 설 공 사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				
	대표자 (담당자)	대표자 : 000 (연락처 :) 담당자 : 000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입력)				
위와 같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시공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4부)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사항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BOD	TOC	T-N	T-P	SS
	지원 전					
	지원 후					
	저감 효율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나. 설계 사양

다. 유지관리계획

- 1) 연간 유지관리계획
-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 원, VAT제외)	비 고
순 공 사 원 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경 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 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			만단위 절사

다.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가능

공사종류	규격	재질(형식)	수량	금액 (원)	비고
합계					
토목공사					
-					
-					
소계					
철구조물공사					
-					
-					
소계					
기계공사					
-					
-					
소계					
배관공사					
-					
-					
소계					
전기공사					
-					
-					
소계					
건축공사					
-					
-					
소계					
기타공사					
-					
-					
소계					

라. 공사비 세부내역

- 1) 공사 단가 계산서
-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25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 비교서(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등록가격 등 3가지 항목 이상) 첨부

*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견적서 첨부 시 비교견적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사항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5. 수질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6.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업장소재지약도			
업체명		대표자명	
본사연락처		팩스	
사업장주소			
사업장연락처		팩스	
담당자연락처		핸드폰	
약도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질개선 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시공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 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이행확인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환경전문 공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상기 본인은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업장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폐수처리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협약에 따라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해당 시설 준공으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폐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폐수처리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폐수처리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폐수처리시설 사용기간은 가동개시 신고서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 이전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사업 내역	방지시설	종류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각 1부)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귀하